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설계 양상

- 능곡선사유적공원, 안산신길역사공원, 용죽역사공원을 대상으로 -

김기욱* · 소현수**

*(주)조경그룹 이작 주임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A Design Aspects of Historic Parks Preserving Buried Cultural Heritages

- In the Case of Neunggok Prehistoric Remains Park, Ansan Singil Historic Park, Yongjuk Historic Park -

Kim, Ki-Uk* · So, Hyun-Su**

*Senior Staff, Eejaac Landscape Architects.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This study derived the design aspects by carrying out the case study of Neunggok prehistoric remains park, Ansansingil historic park and Yongjuk historic park to which are taken measures to preserve undesignated cultural heritages after studying the related laws & regulations and the systems as the design conditions of historic park preserving buried cultural heritag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laws & regulations related to the historical parks, the historic sites should be preserved and utilized at the same time and can have history-related facility spaces, squares, rest spaces, exercise spaces, education & culture space, and convenience spaces. Second, by the space organization and the circulation system emphasizing only the preservation of buried cultural heritages, the feature-preservation space and the functional space are separated and due to not accepting the usage behavior considering peripheral land use, the effectiveness of the historical park was low. Third, the passive feature-preservation methods such as the preservation of the exposed site in architectural methods, the reproduction of the dugout hut, and the planting Royal azaleas or displaying stone after covering up the location of the pit dwellings with soil and the usage mainly for viewing have weakened the identity of the historical park. Fourth, the fence preventing users' access interferes experiencing the features, and the vertical structure protecting the upper part of the exposed features has overwhelmed the landscape of the historical parks. Fifth, it was difficult to figure out the feature space only by the texts mainly on terminologies and the excavation photographs presented on the information signs which introduce the buried cultural heritages.

Key words: Feature(archaeology), Preservation Measure, Remains Park, Undesignated Cultural Heritage

국문초록

본 연구는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설계 여건으로서 관련 법규와 제도를 고찰한 후, 비지정문화재를 보존조치한 능곡선사유적공원, 안산신길역사공원, 용죽역사공원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여 설계 양상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공원 관련 법규에 따르면 유적지의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고, 역사관련시설공간, 광장, 휴게공간, 운동공간, 교육문화공간, 편의공간을 도입할 수 있다.

[†] **Corresponding Author** : So, Hyun-Su,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Seoul 02504, South Korea, Tel.: +82-2-6490-2848, E-mail: hssu@uos.ac.kr

둘째, 매장문화재의 보존만 강조한 공간구성과 동선 체계에 의해서 유구보존공간과 기능적 공간들이 격리되고, 주변 토지이용을 고려한 이용행태를 수용하지 않아서 역사공원의 효용성이 적었다.

셋째, 건축적 방식의 노출 현지보존, 움집 재현, 복토 현지보존 후 철쭉이나 석재로 수혈주거지 위치를 표시하는 소극적 유구 보존방식과 관람 위주의 활용으로 인하여 역사공원의 정체성이 약했다.

넷째, 이용자 접근을 막는 울타리가 유구의 체험을 방해하고, 노출된 유구의 상부를 보호하는 수직 구조물이 역사공원의 경관을 압도하였다.

다섯째, 매장문화재 정보를 전달하는 안내판에 전문용어 위주의 텍스트와 발굴 사진만 제시하여 유구 공간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주제어: 보존조치, 비지정문화재, 유구, 유적공원

I. 서론

각종 개발사업 시 마주하게 되는 매장문화재는 사업 시행사, 지자체 관리자, 이용자의 이해가 충돌하는 난제가 된다. 서울시는 2018년 9월 공평도시유적관을 개장하였는데, 지금까지 도심 내 매장문화재 일부를 점적으로 전시한 형태와 다르게 면 단위로 접근하여 지하 1층 전체 공간을 확보하였다. 이는 고고학, 도시학, 건축학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매장문화재의 보존 방안을 고민한 결과로서 공평동 톨¹⁾을 적용하여 매장문화재를 보존하는 사업 시행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협의를 도출한 결과다. 또한 2017년 1차 완공된 돈의문 박물관마을에서는 근대기 한옥, 일식 주택, 개발 시기의 슬라브 집과 소형 상업 건물 등 그 장소에 존재하는 역사적 층위를 모두 담고, 지형과 필지라는 도시 조직을 보존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엄밀한 원형 보존이 아니라 활용에 무게를 준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1].

도심에서 발굴되는 매장문화재를 전시하기 위하여 건물 지하층의 유구 위에 강화유리를 덮어서 보존하는데, 외부공간에는 유적공원²⁾을 만들어 지상 유적을 보존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두 가지 경우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여건이 다르다. 여러 개의 역사적 층위를 다루고 전시 컨텐츠 방식 등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건축적 접근이 진일보한 반면, 유적공원에 대한 조경 분야의 관심은 부족하다.

매장문화재를 국가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경우

가 아닌 비지정 매장문화재가 보존 대상이 되면 이들을 근린공원이나 역사공원 등 도시공원에서 수용한다. 법적 구속력이 적은 비지정 매장문화재를 보존한 유적공원은 사업 시행사가 주도하여 조성하는데, 매장문화재의 보존·활용에 있어서 소극적이며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유적공원들이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외부공간에서 비지정 매장문화재를 보존·활용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설계 작업에 착안하였다. 먼저 설계 여건을 제공하는 관련 법규와 제도를 고찰하고, 현장의 경관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설계 양상을 도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더불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함으로써 비지정 매장문화재를 보존·활용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의 대상

HanUI(2012)[2]은 전국에 유적공원 85개소가 분포한다고 밝히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유적공원 30개소의 현황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박물관과 사적을 제외하면 외부공간에 해당되는 것은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죽전중앙공원, 울산 구영리 선사마을공원, 고강선사유적공원, 안성공도 만정리 유적공원, 여수선사유적공원, 화정유적공원, 김해율하유적공원과 2005년 주제공

Table 1. The Summary of Study Sites

Division	Neunggok Prehistoric Remains Park	Ansan Singil Historic Park	Yongjuk Historic Park
Location	Neunggok-dong, Siheung-si, Gyeonggi-do	Singil-dong Danwon-gu, Ansan-si Gyeonggi-do	Yong-dong, Pyeongtaek, Gyeonggi-do
Size	6,150m ²	15,100m ²	30,930m ²
Established year	2009	2013	2017
Remains with Preservation measures	Pit dwelling from the New Stone Age	Pit dwelling from the New Stone Age	Ditch-enclosed Settlements, Pit dwelling from the Bronze Age

원 도입 이후 역사공원으로 지정된 능곡선사유적공원, 신길역 사유적공원이 포함된다. 이에 본 연구의 대상은 매장문화재 보존·활용 목적에 적합한 주제공원으로서 역사공원으로 한정한다. 사례연구는 능곡선사유적공원, 안산신길역사공원과 2017년에 조성된 용죽역사공원을 추가하였다. 이들은 매장문화재를 현지보존 조치한 공원으로서 보존방식과 공원의 규모 등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를 지닌다. 이때, ‘유적공원’은 법적 용어가 아니므로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이라고 정의한다.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능곡선사유적공원은 2003년 능곡택지개발사업에서 도로로 계획되었던 부지에서 신석기시대 마을 유적이 발견되어 현지보존 조치함으로써 터널 상부에 조성되었다(Figure 1a). 안산신길역사공원은 2002년 안산신길지구 택지개발사업 시 신석기시대 수혈주거지가 발견되어 현지보존한 공원이다(Figure 1b).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용죽역사공원은 2004년 용죽도시개발사업지구내 3호 근린공원 부지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취락을 둘러싼 도랑인 환호와 분묘가 발견되어 현지보존하고 역사공원을 조성하였다(Figure 1c). 세 곳의 연구 대상지 주변에는 아파트단지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입지하였다.

2. 연구의 방법

유적공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외부공간에 소재한 비지정 매장문화재를 보존·활용하기 위해서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고 확인하였다. 따라서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설계 여건을 제공하는 관련법규와 제도에 착안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역사공원과 관련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 규칙’, ‘도시공원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그리고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조성 과정에 대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관련 법규가 제공하는 설계의 기회요소와 위협요소를 파악하였다.

다음은 사례연구로서 세 개의 역사공원에 대한 조성 현황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평면도 분석과 2018년 2월부터 9월까지 2회씩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설계 항목으로서 첫째, 보편적 공원의 공간구성과 관련되는 공간의 기능, 기능적 공간의 배치, 동선 체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설계 내용으로서 유구 보존방법, 도입 시설로서 유구 보호시설과 유구 안내시설의 디자인을 고찰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서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설계 양상을 정리하고, 문제의 양상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3. 연구사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한 연구로서 Shin(2015)은 법령과 관련하여 명칭, 개념 정리, 법 내용의 체계화 등의 개정을 제안하였다[3]. 또한 매장문화재법이 개발사업에 따른 발굴조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제정 및 개정된 점을 비판하고 매장문화재 교육과 홍보,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의 국가 부담 강화를 제시하였다[4]. 이들은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다수의 연구자들이 유적공원의 문제가 제도적 장치와 관련된다고 인식하였는데, 매장문화재 보존제도에서 보존조치와 사후 관리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리와 활용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5].

Kim(2006)은 유적공원이 주변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나홀로 박제식 공원 조성, 시설물의 부조화, 유적의 설명 부족, 지속적인 관심 유도를 위한 프로그램 부재라는 문제를 지적하였다[6]. 또한 전북 지역에 소재한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핀 후 조성 단계부터 관리와 활용에 대한 계획적 조성, 관리 주체의 선정, 홍보를 통한 활용, 사회 교육으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7]. Shin(2018)은 조정 분야가 발굴 유적의 보존 및 전시 효과 상승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분야이며, 과거의 흔적을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8].

역사공원에 대한 초창기 연구로서 Ahn(2001)은 유적의 보존과 활용의 문제와 관련하여 역사공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개념과 정비 유형을 설명하였다[9]. Gil(2016)은 역사공원이 광범위한 역사자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관된 철학과 방향을 제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역사유산공원(heritage park), 역사기념공원, 역사주제공원, 역사적공원이라는 유형을 제시하였다[10]. 이에 따르면 복원자원을 다룬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은 역사유산공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서 매장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와 관련된 제도가 명료하게 규정되지 않았으며, 이것이 유적공원의 문제를 양산한다고 이해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는 법적 규제가 약한 비지정 매장문화재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고, 보존과 활용 방식의 결과물로서 역사공원 디자인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설계 방향을 제안한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지닌다.

III. 결과 및 고찰

1.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 관련 법규와 제도

1) 매장문화재 관련 법규와 제도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관련 조항을 두었다가 2011년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분리 제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11]. 동법 제4조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은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제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비지정 매장문화재의 보존·활용도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동법 제14조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에 따르면,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현지보존, 이전보존, 기록보존, 그 밖에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에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사업 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에게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규정 제18조 보존조치 필요성 판단에 따라서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완료되면 전문가 검토회의 및 학술자문회의에서 나온 보존조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보존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매장문화재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청장은 동법 제14조를 근거로 하여 매장문화재 평가단을 조직하여 발굴 문화재를 평가하고, 지자체와 시행사의 보존조치 의견 수렴을 통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동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를 지시한다.

이와 같이 문화재청의 심의를 통해서 보존조치 허가를 받지만, 이후 보존조치를 위한 구체적 과정이나 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보존조치를 시행하는 사업 시행사가 주도하며, 해당 지자체 담당자는 유구 보존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수행된 방식을 따르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양산되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비지정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 사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2) 역사공원 관련 법규와 조성 과정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주제공원 중 하나인 역사공원을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라고 규정하였다. 휴식과 교육이라는 활용의 관점이 강조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역사공원에 도입 가능한 시설을 역사자원의 보호·관람·안내를 위한 시설로서 조경시설·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제외한다)·운동시설·교양시설·편의시설 및 역사관련시설(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였다[12]. 이와 같이 역사공원의 도입시설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에는 유구 보존을 전제하고, 도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의 공간을 도입할 수 있다.

(2) 도시공원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과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도시공원·녹지의 세분·설치·관리 등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였다[13]. 여기에 제시된 역사공원의 설치기준은 첫째, 역사공원은 보존, 보전, 복원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해서 조성해야 한다. 둘째, 유적지 중심 역사공원은 유적지의 보존과 활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역사공원의 설치·보전·정비는 관계기관·전문가·지역주민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넷째, 주요 시설물의 설치 이외에 이를 이용객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섯째,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필수시설로 한다. 지침에서도 역사공원은 유적지 보존과 활용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명시하였다. 하지만 다소 추상적 내용이기 때문에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이라는 특수한 유형의 공원을 설계하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3)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조성 과정

매장문화재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적이나 비지정 매장문화재 모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존조치를 시행한다. 이때 사적의 발주 주체는 해당 지자체가 되고,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문화재청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또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서 문화재수리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공원 계획과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는 제약을 받는다.

반면 비지정 매장문화재는 대부분 시행사가 공사비를 일괄 부담하여 역사공원을 조성한다. 또한 일반 조경업체가 설계하고, 문화재청은 공원 조성 후 원형보존에 대한 준수만 확인한다. 즉, 매장문화재의 보존을 만족시킨다면 사적으로 지정된 경우에 비하여 역사공원 설계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가진다.



Figure 1. A Panoramic View of Study Sites

3)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실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결과물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제도적 기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역사공원이 외부공간에 소재한 비지정 매장문화재를 보존·활용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이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두 가지 법규와 제도를 고찰하였다. 결과적으로 구체적 설계안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환경은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된 기회 요소와 위협 요소가 공존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먼저 위협 요소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보존조치에 대한 책임을 맡긴 점인데, 기존에 수행된 방식을 벗어나지 않는 소극적 해결 양상으로 이어지며, 매장문화재의 활용에 관한 관점도 보수적이다. 특히 사적이 아닌, 비지정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조성에는 문화재청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문화재 전문 설계업체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위협 요소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과 도시공원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역사공원의 도입 시설에 대한 제약이 없다는 점을 기회 요소라고 파악할 수 있다. 반면에 매장문화재에 초점을 맞춘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과 이질적 경관을 연출하는 시설물이 도입될 가능성은 위협 요소가 된다.

2.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설계 양상

1) 역사공원의 공간구성

(1) 공간의 기능

매장문화재를 보존하고 진정한 역사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역사공원의 공간구성은 일반 공원과 차별화되어야 한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역사공원에 도입 가능한 공간의 종류를 규정한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역사공원에 도입 가능한 공원시설과 연계한 공간의

기능을 정리하였다. 역사관련시설을 매장문화재에 필요한 유구 보호시설과 유구 안내시설로 이해하고 이들이 설치된 영역을 ‘유구보존공간’이라고 설정하였다. 부속되는 기능적 공간으로서 도시공원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서 필수시설로 규정한 ‘광장’, 조경시설과 휴양시설로 구성되는 ‘휴게공간’, 운동시설로 구성되는 ‘운동공간’, 교양시설로 구성되는 ‘교육문화공간’, 편의시설로 구성되는 ‘편의공간’으로 정의하였다.

사례연구의 첫 번째 과정으로서 세 개의 역사공원 배치도에 기능적 공간들을 표시하여 개념도를 작성하였다(Figure 2). 능곡선사유적공원의 유구보존공간은 신석기시대 수혈주거를 움집으로 복원한 공간(A-1)과 복토하고 수혈주거지 위치만 표시한 공간(A-2)으로 구분된다(Figure 3a, b, c). 여기에 두 개의 휴게공간(B-1)·(B-2)과 중앙광장(C)이 있다. 점적으로 확보한 휴게공간에는 퍼골라(B-1)와 초가 정자(B-2)를 배치하였고, 중앙광장은 시멘트 포장 위에 벤치를 배치하였다.

다음으로 안산신길역사공원은 발굴된 신석기시대 수혈주거지 유구를 보존처리하고 1m 가량 복토한 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현하였다. 공원은 세 개로 구분된 유구보존공간(A-1), (A-2), (A-3)과 휴게공간(B), 교육문화공간(C)으로 구성된다(Figure 3e-h). 역사학습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교육문화공간에 야외스텐드가 있다.

마지막으로 용죽역사공원의 유구보존공간은 정상부에 청동기시대 의례 시설로 추정되는 환호 유적지를 현지보존한 공간(A-1), 수혈주거 터를 현지보존한 공간(A-2), 산재한 수혈주거 터를 복토하고 철쭉을 식재하여 위치를 표시한 공간들(A-3)로 구성된다. 이들을 포함하는 넓은 녹지를 유구보존공간으로 설정하였는데, 여기에 산책로와 퍼골라 2개소, 소수의 벤치가 배치되었다. 공원 하단부에 조성된 광장(B)은 퍼골라와 벤치가 놓인 포장면이 지나치게 넓게 확보되어 공간 효율이 떨어지며, 놀이공간(C)에는 유구보존공간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놀이시설물이 배치되었다(Figure 3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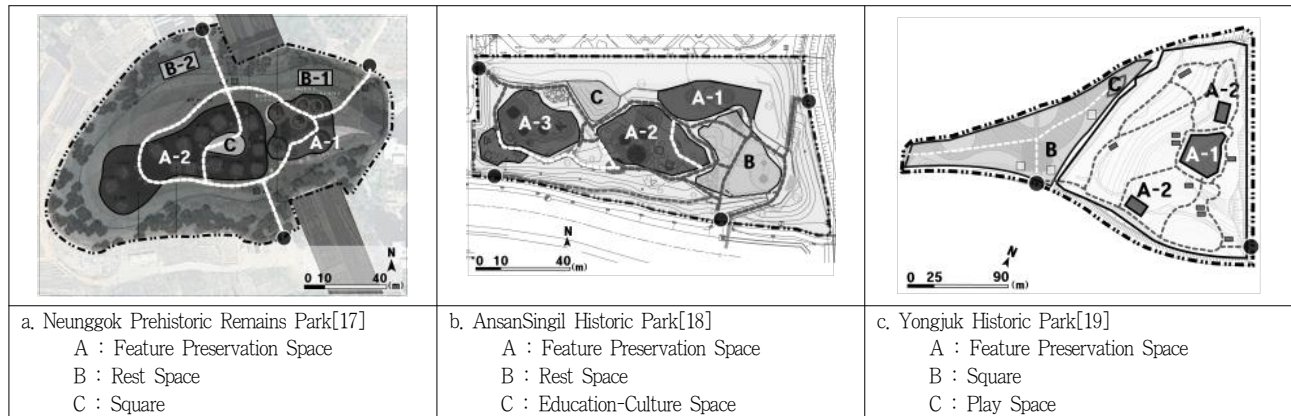


Figure 2. The Concept Plan of Space Organization and Circulation System of Study Si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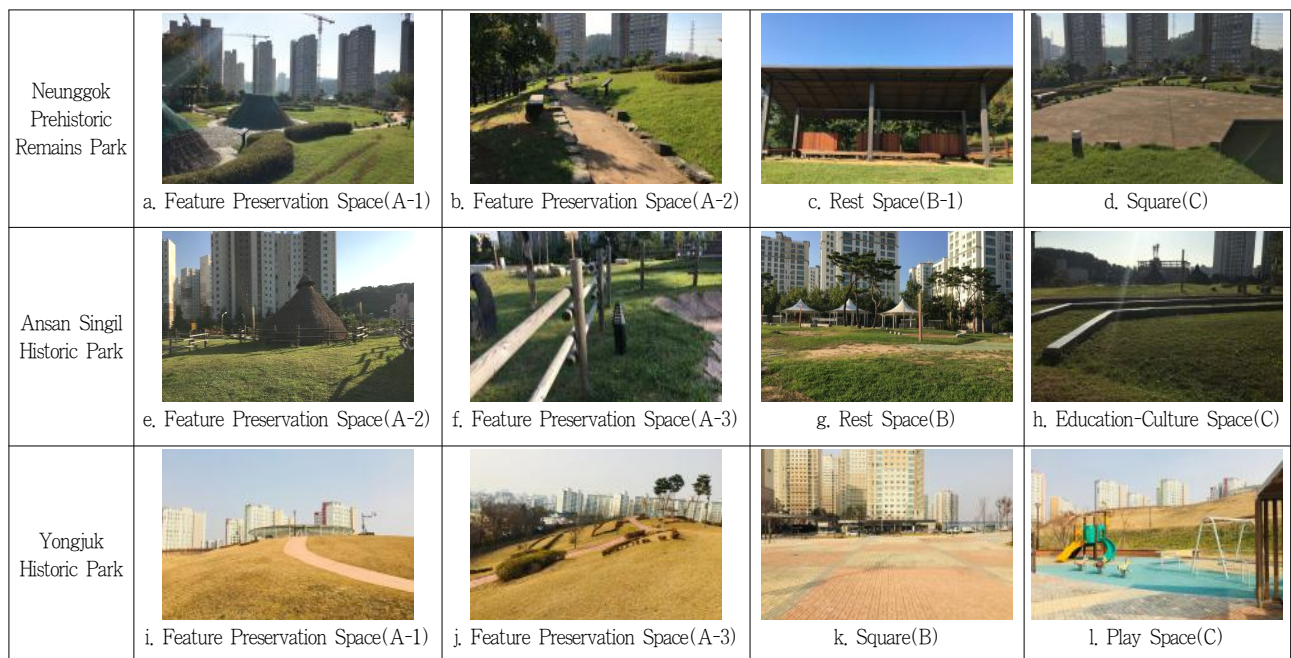


Figure 3. The Main Spaces of Study Sites

(2) 기능적 공간의 배치

능곡선사유적공원에서 두 개의 유구보존공간이 부지 면적의 45%를 차지하며 공원의 중앙에 위치한다. 복토보존 처리한 유구보존공간 안쪽에 광장이 배치되었다. 나머지 45%에 해당하는 바깥쪽 공간은 산책로와 녹지로 채워지고, 휴게공간 2개소가 설치되었다. 휴게공간에 놓인 커다란 퍼골라가 체험 활동공간으로 활용된다. 전체 부지 규모에 비하여 배치된 기능적 공간이 적다.

반면 안산신길역사공원은 세 개의 유구보존공간과 휴게공간, 교육문화공간이 장방형 부지에서 짜임새있게 배치되었다. 하지만 교육문화공간에는 전체 공원에 비하여 규모가 큰 야외스탠드가 설치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용죽역사공원은 유구보존공간이 동쪽 언덕에 배치되고, 낮은 서쪽 부지는 광장과 놀이공간으로 이분되었다. 공원 부지의 70%를 차지하는 유구보존공간의 기능이 단순하다. 유구보존공간, 광장, 놀이공간이 연계되지 않는 배치가 비효율적이며, 넓은 녹지에 식재가 거의 배제되었다. 이러한 현황은 인근 주민들이 공원의 디자인을 바꿔 달라는 민원의 원인을 제공한다.

(3) 동선 체계

능곡선사유적공원의 출입구는 3개소이며, 모든 동선이 움집이 복원된 중앙의 유구보존공간으로 연결된다. 유구보존공간(A-1)이 개방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나, 복토된 공간(A-2)은 경계부에 산책로가 조성되었다. 이런 동선 체계가 유

구를 보기 위하여 방문하는 경우 외에는 공원 이용도를 낮추는 결과를 야기한다.

안산신길역사공원의 동선은 4개의 출입구에서 유구보존공간, 교육문화공간, 휴게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주동선이 기능적 공간 경계부에 배치되어 공원을 순환하는 구조이다. 유구보존공간은 잔디밭으로 조성되어 자유롭게 이동하며 관람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개방하고 외곽 순환로를 설정한 동선 체계가 효율적이다.

용죽역사공원의 입구 광장에서 유구보존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이 하나뿐이며, 높은 곳에 위치한 유구보존공간의 경계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다른 기능적 공간으로부터 접근성이 좋지 않다.

(4) 역사공원의 공간구성 양상

세 개의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에 도입된 공간은 유구보존공간, 광장, 휴게공간, 교육문화공간과 법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놀이공간이 조성된 반면, 법규에서 규정한 운동공간과 편익공간은 확보되지 않았다. 또한 넓은 광장이나 교육문화공간의 효율성이 적고, 일상적 공간 이용행태와 관련되는 휴게공간과 놀이공간은 소극적으로 도입된 점을 방문자가 적은 요인으로 판단하였다.

유구보존공간이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랜드마크가 되기 때문에 보존조치된 유구 공간의 규모와 위치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공원 규모가 가장 작은 능곡선사유적공원과 가장 큰 용죽역사공원 모두 유구에 비하여 녹지로 채워진 유구보존공간이 넓게 확보되었다. 또한 보조 공간으로서 광장, 휴게공간, 놀이공간이 유구보존공간과 거리를 두어 분리 배치되었다. 이에 비하면 안산신길역사공원은 유구보존공간, 교육문화공간, 휴게공간이 부지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고 공간의 경계가 뚜렷하게 구획되지 않았다. 유구보존공간과 기능적 공간에 대한 이분법적 공간구성이 이질적 경관을 만들고 공원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에서 주 동선이 향하는 목표점이 유구보존공간이 되어야 하지만, 다른 기능적 공간들과 격리된 문제를 파악하였다. 유구보존공간에 대한 방문 수요가 높지 않기 때문에 보존 공간과 활용 공간을 분리하는 설계 방향은 효과적이지 않다.

2) 매장문화재 보존방식

(1) 유구 보존방법

능곡선사유적공원에서 신석기시대 수혈주거지 24기를 보존하였는데, 수혈주거지 6기는 노출 현지보존법으로 터를 보존하고 4기에는 움집까지 재현하였으며 2기에는 보호각을 설치하

였다. 나머지 18기는 복토 현지보존법으로 처리하고 상부에 녹지를 조성한 후 철쭉으로 경계를 돌려 유구의 위치를 표시하였다(Figure 4a, b, c).

안산신길역사공원은 신석기시대 수혈주거지 23기 중에서 오랜 침식으로 훼손이 심한 3기를 제외한 20기와 빗살무늬 토기, 갈판 등 유물을 보존하였다. 수혈주거지 14기는 복토 현지보존법으로 처리하고, 2기는 전체 복원, 2기는 부분 복원, 2기는 노출 현지보존법으로 발굴 상태를 재현하였다(Figure 4d, e, f). 수혈주거지 5호는 보호각을 설치하고 발굴 유물들을 이전보존하였다.

용죽역사공원에서 환호 2기, 집자리 90기, 돌널무덤 3기 등이 발굴되었다. 이 중에서 환호 1기와 수혈주거지 2기를 노출 현지보존법으로 처리하고, 수혈주거지 19개소는 복토 현지보존 후 상부에 철쭉을 식재하여 위치를 표시하였다(Figure 4g, h, i).

(2) 유구 보호시설

유구보존공간에서 유구 가까이 이용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경계 울타리와 유구 보호시설물이 도입되었다. 능곡선사유적공원의 중앙에 위치한 수혈주거지 2기 경계에 강화유리를 두르고 바깥쪽에 목재 팔각 퍼골라를 설치하여 노출된 유구를 보호하였다(Figure 5a, b).

안산신길역사공원은 유구보존공간의 경계에 낮은 목재 울타리를 돌렸으며, 부분복원된 수혈주거지 바깥쪽을 허리 높이의 강화유리로 막고 막구조 퍼골라를 설치하였다. 또한 수혈주거지 터 상부에 강화유리를 덮고, 유구의 주요 위치에 이름을 표기하였다(Figure 5e, f).

용죽역사공원에서 중심이 되는 환호 유적 영역의 경계부에 분홍색 철재 울타리를 두르고, 유구의 상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름 42m에 이르는 철재 타원형 지붕 구조물을 설치하였다(Figure 5i, j). 또한 수혈주거 상부에 1m 높이의 플라스틱 덮개를 설치하였는데, 지붕 위에 쌓인 먼지와 입면의 스테인레스 구조가 관람을 방해한다. 실내에서 보존처리하는 방식이 적합하지 않았다.

(3) 유구 안내시설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에 유구 안내시설로서 종합안내판과 유구안내판이 설치되었다. 능곡선사유적공원에는 석재와 알루미늄으로 만든 안내판이 설치되었다(Figure 5c, d). 외부 환경에 노출된 알루미늄 안내판의 손상이 많았고, 두 종류의 안내판 모두 가독성이 떨어졌다. 종합안내판에는 유구 현황 평면도가 있고 공원 조성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800자에 이르는 장문의 텍스트와 가공되지 않은 전문용어가 사용되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개별 유구안내판에는 발굴 당시 유구의 사진을 제공하고 출토 유물의 특성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였다.

Neunggok Prehistoric Remains Park			
	a. Dugout Huts and Protecting Canopies	b. Reproduction of the Dugout Hut	c. Boundary Planting of Royal Azaleas at the Pit Dwelling Location
Ansan Singil Historic Park			
	d. Reproduction of the Dugout Hut	e. Reproduction of the Exposure of Pit Dwelling Location	f. Displaying Stone at the Pit Dwelling Location
Yongjuk Historic Park			
	g. Exposure & Preservation of Ditch-enclosed Settlement	h. Exposure & Preservation of Pit Dwelling Location	i. Boundary Planting of Royal Azaleas at the Pit Dwelling Location

Figure 4. The Ways to Preserve the Feature Per Site

안산신길역사공원에는 목재와 갈바눔 안내판이 배치되었다 (Figure 5g, h). 두 종류 모두 내구성과 가독성이 좋았다. 종합 안내판에서 공원 현황도, 개요, 유적과 출토 유물 소개, 선사유적의 의미, 조성 사진, 관리단체 설명 등 공원과 보존조치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유구안내판에는 유구 현황 개념도로 정보전달력을 높였다.

용죽역사공원도 목재와 갈바눔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Figure 5k, l), 종합안내판에서 소재지, 발굴 기간, 발굴 기관 정보와 함께 유적을 설명하고, 발굴 당시 사진과 출토 유물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용죽공원 안내도에는 환호 1호의 위치만 표시되어서 다른 공원시설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유구안내판에는 다른 역사공원과 동일하게 발굴 당시 사진과 유구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4) 매장문화재 보존방식의 양상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에서 노출 현지보존법과 복토 현지보존법이 적용되었는데, 복토 현지보존의 비율이 높은 것은 관리의 편의와 조성 비용의 경제성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이해된다. 복토 현지보존의 경우, 지상부에 유구 위치를 표시하는 정보 전달 목적의 소극적 설계가 반영되었다.

외부에 노출된 유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시설물은 유구의 보존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지만, 형태적으로 이질적 재료의 수직 구조물이 첨가되면서 역사공원의 분위기를 압도하였다. 특히 보존된 유구와 관련 없는 전통정자로 대표되는 토속적 구조물과 퍼골라가 혼용되었다.

유구안내시설로서 평면 형태의 안내판이 설치되었는데, 학술적 텍스트 위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발굴 현황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어서 당시의 입체적 공간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3) 설계 양상을 반영한 개선방향 제언

(1) 편익을 고려한 공간구성에 의한 효용성

유구보존공간이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부속되는 휴게공간, 교육문화공간, 광장 등과 적절히 연계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역사유적에 대한 교육적 방문 수요에 집중하고 인근 주민들의 일상적 이용행태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된다. 즉, 세 개의 역사공원 모두 주거지와 학교에 인접하여 근린공원 기능을 요구하므로 토지이용을 고려한 기능적 공간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간구성과 관련하여 공원마다 보존조치된 유구의 유

Neunggok Prehistoric Remains Park				
	a. Boundary Fence	b. Protecting Canopy	c. General Information Sign	d. Sign for Feature
Ansan Singil Historic Park				
	e. Protecting Canopy	f. Tempered Glass Structure	g. General Information Sign	h. Sign for Feature
Yongjuk Historic Park				
	i. Roof Structure with Fence	j. Boundary Fence	k. General Information Sign	l. Sign for Feature

Figure 5. The Protection & Information Facilities for Features

형, 규모, 위치가 다르고, 확보된 공원 부지의 입지 여건과 규모가 다르다. 이렇게 역사공원의 공간구성을 결정하는 변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설계가는 유구보존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고 배치할 것인지, 더불어 역사공원의 조성 목적에 포함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보존’ 패러다임에 매몰되어 유구 주변을 녹지로 처리한 방식이 공원의 효용을 떨어뜨린다.

이와 관련하여 복토 현지보존 후 상부에 유구 부속물을 조형물처럼 배치하여 매력적 디자인의 광장을 만들고(Figure 6a), 야외영화관, 스테디움, 강연장 등 부족한 문화시설과 레스토랑을 만들어(Figure 6b)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킨 국외 사례가 있다. 국내 법규에서 도입 가능하다고 제시된 편익공간이 역사공원의 효용성을 높이는 요건이 될 수 있다.

(2) 기능적 공간과 유구보존공간의 연계성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동선 체계는 궁극적으로 공원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유구보존공간에 이르도록 계획된다. 따라서 광장, 휴게공간, 편익공간 등 이용자 수요가 많은 곳에서부터 교육을 위한 방문이 아니더라도 공원의 중심인 유구보존공간에 도달하도록 공간들을 분리 배치하지 않고, 산책과 같은 일상적 이용행태와 단절되지 않도록 접근 동선을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외에서는 유구에 계단, 경사로 등 부속 시설을 설치(Figure 6c)하여 접근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3) 공원의 정체성을 만드는 유구 보존방식의 유연성

역사공원의 유구 보존은 수혈주거의 노출원형보존이나 움집 재현, 그렇지 않으면 복토 후 수혈주거 터를 재현하고 철쭉 식재나 석물로 수혈주거지 위치를 표현한 방식이었다. 이것은 보존 목적에 집중하였기 때문인데, ‘비지정문화재’를 보존·활용하는 방법으로 역사공원을 조성한다는 전제에서 보면, 경직된 설계 태도이며 이용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어려운 기법이다. 유구를 복토하여 상부에 재현한 유구가 원형이 아니라면 흥미를 제공하는 디자인으로 유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창의적 디자인은 유구의 생김새와 관련되는데, 포럼, 신전, 집터, 성벽 등 다양한 형태의 유구를 대상으로 한 국외 사례에서 디자인의 확장성이 높았다. 형강 기둥과 채색 강화유리 천정을 덧대어 유구보존공간 자체를 문화공간으로 만든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Figure 6d). 우리 역사공원에서 반복된 수혈주거는 공원별 정체성을 만들기 어려운 기반이 되는데, 용죽역사공원의 환호는 경관적이나 스토리텔링으로 공원의 정체성을 만들기에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유구보존공간과 격리된 교육문화공간과 광장을 제공하는 대신 유구보존공간에서 테마에 적합한 이벤트를 진행하여 진정성 높은 체험을 제공한 국외 사례는 유구에 대한 유연한 사고를 설명한다(Figure 6e).

(4) 유구 보호시설 디자인의 조형성

역사공원에 도입된 유구 보호시설이 이용자 접근을 막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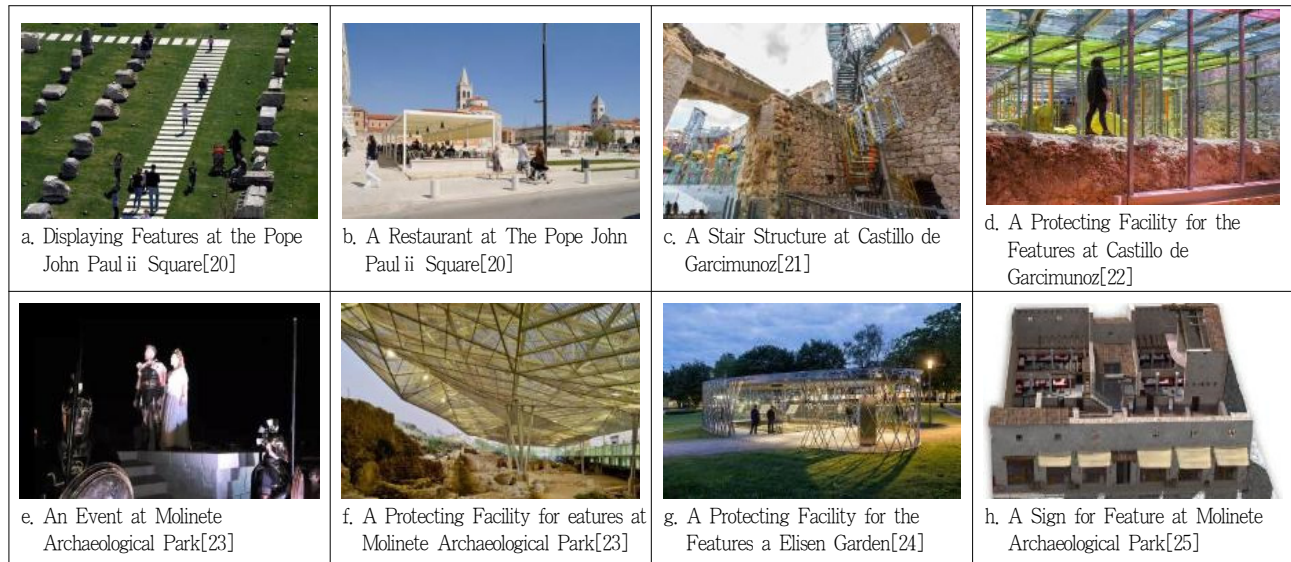


Figure 6. A Case Study of Overseas

유구 관람의 편의성과 가시성이 떨어졌다. 역시 유구를 보존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 결과이다. 또한, 유구의 물리적 형태가 평면적인 성향인데, 노출된 유구의 상부를 막아주는 보호각은 수직성이 강하다. 따라서 보존과 경관성을 동시에 고려한 디자인이 요구된다. 전통정자나 막구조 퍼골라처럼 보편적 공원에 사용되는 기성품은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과 어울리지 않는다.

유구는 과거의 유물이므로 토속적 디자인의 시설물이 적합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예술성을 고려한 세련된 디자인으로 공원의 경관성을 향상시킨 국외 사례들이 있다. 설계 공모를 통해서 유구의 상부 구조물을 조형적으로 디자인하고(Figure 6f), 유구보존공간 경계부에 스테인레스 메쉬 구조물(Figure 6g)을 둘러 투시성과 영역성을 만족시키고 야간경관도 고려하였다. 공원의 랜드마크로서 인지성을 높인 조형적 접근이 인상적이다.

(5) 흥미를 유발하는 유구 안내 방식의 다양성

현재와 시간적 간극이 큰 선사시대라는 점, 오랜 시간 땅속에 묻혀있던 구조물의 극히 일부만 복원된다는 점에서 매장문화재를 이해하려면 정보전달이 필요하다. 종합안내판과 개별 유구의 안내판이 도입되었는데, 전문용어로 표현된 텍스트가 많고 발굴 사진 정보만 제공됨으로써 이용자들이 해당 매장문화재를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조물의 입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2차원적 안내판을 설치하는 형식 외에도 복원된 3D 이미지나 모형(Figure 6h)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전달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IV. 결론

본 연구는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경관을 결정하는 설계 여건으로서 관련 법규와 제도를 고찰하고,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발굴된 비지정문화재의 보존조치를 위해 조성된 역사공원 세 곳의 설계 양상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공간에서 비지정 매장문화재를 보존·활용하기 위해서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조치가 결정된 이후 사업 진행이나 설계 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법적 구속력이 적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서 역사공원의 형태가 결정된다.

둘째, 역사공원 관련 법규에 따르면 유적지의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고, 역사관련시설공간, 광장, 휴게공간, 운동공간, 교육문화공간, 편의공간을 도입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설계 지침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매장문화재의 보존만 강조하여 이분법적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동선을 처리한 결과, 역사공원의 중심이 되는 유구보존공간과 기능적 공간들이 격리되고, 주변 토지이용을 고려한 일상적 이용행태를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역사공원의 효용성이 적었다.

넷째, 건축적 방식의 노출 현지보존, 움집 재현, 복토 현지보존 후 철쭉이나 석재로 수혈주거지 위치를 표시하는 등 소극적 유구 보존방식과 관람 위주의 단순한 활용이 역사공원의 정체성을 만들지 못했다.

다섯째, 유구로 접근을 막는 울타리와 보호각 등 수동적 기

능의 유구 보호시설물이 이용자의 진정성 있는 체험을 방해하고, 노출된 유구의 상부를 보호하는 정자와 퍼골라 등 수직 구조물이 역사공원의 경관을 압도하였다.

여섯째, 매장문화재의 특성상 정보전달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전문 용어 위주의 텍스트와 발굴 당시 사진이 제시된 평면형 안내판으로 흥미와 이해도가 떨어졌다.

일곱째, 이상과 같은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설계 양상을 반영하여 편익을 고려한 공간구성에 의한 효용성, 기능적 공간과 유구보존공간의 연계성, 공원의 정체성을 만드는 유구 보존방식의 유연성, 유구 보호시설 디자인의 조형성, 흥미를 유발하는 유구 안내 방식의 다양성을 개선방향으로 제안하였다.

개발사업 진행 중 발굴된 비지정 매장문화재를 보존조치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여건이 역사공원 설계의 문제점을 유발하였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설계 환경과 정서가 상이한 국외 사례를 참조하여 개선방향을 제안한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전제하고, 건축적 처리 방식과 달리 매장문화재의 보존에 취약한 외부공간이라는 여건에서 시각미학적, 사회행태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어떤 태도로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공원의 정체성, 효용성,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 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 주 1) 매장문화재를 최대한 '원위치에 전면 보존'한다는 원칙으로 사업 추진 시 매장문화재를 고려한 건축설계를 하고, 사업 시행자에게 매장문화재 보존 면적에 따른 용적률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보존된 유적전시관을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제도
- 주 2) 문화유적공원을 고고학 조사 이후 유적 및 유구를 (이전)복원한 곳으로서 사적과 지방문화재 등으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라고 정의하였다[3].

REFERENCES

[1] Seoul Museum of History(2018). Urban Remains in Seoul and the Museum. Symposium Papers for Opening Celebration of Gongpyeong Historic Sites Museum.

[2] Hanu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2012).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eservation Measures for the Buried Cultural Heritage.

[3] Shin, O. J.(2015). A Study on Revision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Buried Cultural Properties. Public Land Law Review, 72(-): 343-369.

[4] Choi, M. J(2012). Problems of Archaeological Heritage Protection System and Its Improvement Plan. Korean Association for Archaeological Heritage 25(-): 75-99.

[5] Ryu, H. C.(2014). The Need and the Direction to Improve the System of Measures for the Preservation of Buried Cultural Heritage.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47(-): 146-159.

[6] Kim, Y. P.(2006). Study on the Vitalization Measures of Remains Parks with Excavated Features. Honam cultural property research center, 6(-): 161-175.

[7] Kim, J.(2012). A Study on the Utilization plan of Cultural heritage site parks-focusing on Jeonbuk region. Honam cultural property research center, 115-143.

[8] Shin, H. S.(2018). A Study on the Landscape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Construction Principles by the Type Outside Relics.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6(4): 58-69.

[9] Ahn, G. B.(2001). A Study on the Conception of Historic Park and its Types.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19(2): 1-14.

[10] Gil, J. H.(2016). Analysis on Trends in the Designation and Development of Historical Park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4(2): 130-142.

[11] Ju, S. D.(2015). A Study on the Improving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Local System-Focused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uried Cultural Property. Journal of Policy Development 15(1) : 161-189.

[12] <http://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13] <http://www.law.go.kr/행정규칙/도시공원·녹지의유형별세부기준등에관한지침>

[14] www.blog.daum.net/chooga/

[15] www.ansanstory.tistory.com/91/

[16] www.iusm.co.kr/

[17] Drawn up by the Author Based on the Materials Offered from the Park Management Department, Siheung-si, Gyeonggi-do

[18] Drawn up by the Author Based on the Materials Offered from the Park Management Department, Ansan-si, Gyeonggi-do

[19] Drawn up by the Author Based on the Materials Offered from the Park Management Department, Pyeongtaek-si, Gyeonggi-do

[20] www.landezine.com

[21] www.auriconstrucciones.com

[22] www.new.rushi.net

[23] www.metalocus.es

[24] www.aachen.de

[25] www.researchgate.net

원 고 접 수 일: 2019년 2월 12일
심 사 일: 2019년 2월 23일 (1차)
: 2019년 3월 8일 (2차)
게 재 확 정 일: 2019년 3월 8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